

1998. 10. 21

제80회 임시회

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검토보고서

운영위원회

<전문위원 : 장재영>

순 서

-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
-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
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
-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안 7
-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9
-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11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■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제3조 제2항 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, 문화홍보실, 구정발전담당관, 총무과, 회계과, 지방세과, 구민과, 민방위재난관리과, 보건소”를 “기획감사실, 정보통신실, 총무과, 지방세과, 회계과, 민원봉사과, 보건소”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 “사회복지, 가정복지과, 환경보호과, 청소행정과, 위생과, 지역경제과, 지역교통과, 건설과, 건축과, 지적과”를 “사회복지과, 환경위생과, 청소행정과, 경제과, 도시개발과, 교통과, 건설과, 건축과, 지적과”로 한다.

■ 검토의견

-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심의·의결하여야 할 안건을 본회의 심의에 앞서 그 예비적 심사를 위하여 설치·운영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, 의회가 회부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. 지방자치법 제50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51조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과 청원 등을 심사하며, 제54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가능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『위원회조례』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명칭, 위원정수, 소관, 위원의 임기, 선임, 위원장, 간사, 의사정리권, 질서유지권, 소집, 정족수, 비밀회의, 공청회절차, 회의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논의된 것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것입니다.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제54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하여야 하고, 여기서 「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」이라 함은 조례로 정해진 각 위원회의 관할에 해당

하는 의안을 의미하며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개정조례안은 서구청의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18실·과·담당관제가 15실·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관사항을 개정함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

■ 기타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, 제51조 및 제54조
-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